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51호(2026. 6. 12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방탄보트 계류시설 설치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254-22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2,990.39㎡(2026. 6. 14. ~ 2031. 6. 13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 - 성 명: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
  - 주 소: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2

2026. 6. 12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